

○ '93. 7. 26 대법원 확정 판결문(부천시 승소)집수

○ 현대자동차학원에 등록된 수강생의 정리기간을 감안 '93. 9. 30까지 자천천거토록 게고하였으며, 이의 시행을 위한 작서를 정구하여 공중

□ 질문

○ 도에서까지 계속 철거하라는 독촉과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 답변

○ 경기도로부터 철거 독촉을 받은 바 없음.

□ 질문

○ 승소판결후 전체 신시가저 개발 공장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무엇인가

□ 답변

○ '92. 7. 26. 대법원 확정 판결문 집수후 '93. 10. 31. 준공을 목표로 현대자동차학원 부지내의 공사(하수암거공사)를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장없음.

□ 질문

○ 보상금은 언제 예치되었으며, 현대자동차학원측으로부터 임대료는 받고 있는가

□ 답변

○ 토지 및 지장물 공탁(제길) : '90. 11. 29. (₩1,801,340천원)

○ 토지 및 지장물 공탁(이의제길) : '91. 11. 14(₩120,505천원)

○ 영업권 공탁(제길) : '92. 6. 10(₩16,457천원)

○ 철거지인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하지 않았음.

□ 질문

○ 미철거에 의해 설계변경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과 사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금액을 밝히라.

□ 답변

○ 현대자동차학원 미철거에 따른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이에따른 추가 비용부담도 없음.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3년 8월 27일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3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93년 9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김수한)

가. 제안이유

- 1993. 7. 12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안 제2조)
-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본안건을 이번 회기에 조례로 제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은?	• 9월 11일 재산등록이 끝남과 동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이 되어야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중앙단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공개후의 현금누락 등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조례이므로, 타 시·군의 조례제정 경과를 살펴가며, 본 조례 제정에서 오는 시행 착오 및 모순점을 수정하여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자.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190
의 결	93. 9. 10
년 월 일	(제22회)

제출년월일 : 93년 9월 9일

제 출 자 : 총무위원회

1. 수정이유

-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을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함.

2. 주요골자

- 가. 안 제2조(구성) 제①항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의회의장과 협의하여를 삼입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천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3년 8월 27일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3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93년 9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김충신)

가. 제안이유

- 기존 법정동은 필지별로 굴곡이 있게 경계획정 되었었으나 본 지구는 중동신도시 개발지구로 공동주택 위주로 건설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므로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 임주민의 혼란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 경계조정이 불가피하여 의회의견을 청취(제20회 임시회 '93. 5. 7)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경기도 제7호 '93. 7. 14)을 받아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정동 경계조정

편 입 되 는 지 역	편 입 받 는 지 역	경 계 획 정 수 단
원미구 심곡동 일부 984,961㎡ 원미구 약대동 일부 29,301㎡ 원미구 춘의동 일부 11,515㎡ 원미구 상 동 일부 8,188㎡	원미구 중동 (1,033,965㎡)	• 주택단지 및 도로를 경계로 획정 • 행정동 법정동 명칭 일치
원미구 중 동 일부 21,152㎡	원미구 상동 (21,152㎡)	
원미구 중 동 일부 10,374㎡	원미구 약대동 (10,374㎡)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1
의 결	93. 9. 10
년 월 일	(제22회)

제출년월일 : 93. 8. 27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사유

- 기존 법정동은 편지별로 굴곡이 있게 경계획정 되었었으나 본 지구는 중동 신도시 개발지구로 공동주택 위주로 건설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므로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 입주민의 혼란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 경계조정이 불가피하여 의회의견을 청취(제20회 임시회 '93. 5. 7)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경기도 제7호 '93. 7. 14)을 받아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법정동 경계조정

편 입 되 는 지 역	편 입 받 는 지 역	경 계 획 정 수 단
원미구 심곡동 일부 984,961㎡ 원미구 약대동 일부 29,301㎡ 원미구 춘의동 일부 11,515㎡ 원미구 상 동 일부 8,188㎡	원미구 중동 (1,033,965㎡)	• 주택단지 및 도로를 경계로 획정 • 행정동 법정동 명칭 일치
원미구 중 동 일부 21,152㎡	원미구 상동 (21,152㎡)	
원미구 중 동 일부 10,374㎡	원미구 약대동 (10,374㎡)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과구역) 「별표」중 원미구 중동, 심곡동, 상동, 약대동, 춘의동을 “빈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